

『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10월 22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10월 23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10월 31일

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읍·면에 걸쳐 있어
- 해당 읍·면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을 높이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.

다. 주요내용

- 낙정지구
 - 옥성면 구봉리 일부(56필지 93,191㎡)를 도개면 용산리에 편입
- 낙산지구
 - 도개면 신림리 일부(16필지 3,007㎡)를 해평면 일선리에 편입
 - 선산읍 독동리 일부(76필지 78,489㎡)를 해평면 낙산리에 편입

○ 해평 1, 2, 3지구

- 산동면 성수리 일부(32필지 36,831.1m²)를 해평면 문량리 편입
- 해평면 문량리 일부(67필지 18,614m²)를 산동면 성수리 편입
- 산동면 성수리 일부(13필지 7,530m²)를 해평면 괴곡리 편입
- 해평면 괴곡리 일부(8필지 1,224m²)를 산동면 성수리 편입

라. 참고사항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1항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성 수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읍·면에 걸쳐 있어
- 해당 읍·면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낙정지구, 낙산지구, 해평 1, 2, 3지구내 필지를 해당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새로운 읍·면에 편입하는 내용임. (5개 읍면 268필지 238,886.1m²)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둘 이상의 읍·면에 걸쳐 있는 농지의 경계를 조정해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, 지역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- 향후 관련 필지의 공부 정리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